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RPS 제도를 계약시장제도로 전환 등〉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29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호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8.
3. 회부연월일 : 2026. 1.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하려는 제도임.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의 변화와 함께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가격 변동성이 커서 RPS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공급인증서 관련 발전사들의 자체 투자보다 외부 구매, RE100 기업(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글로벌 기업)과 수요의 경합,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물시장 공급인증서 가격이 상승하여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전사업자·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생ener지를 보급하도록 하며, 보급의무대

상자 등에게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를 기준금액 납부 또는 면제를 통하여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의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의5 및 제12조의14부터 제12조의21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RPS 제도를 계약시장제도로 전환

개정안은 장기고정가격 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방식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이하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공고하고, 계약시장제도에서 낙찰되어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정부가 지정한 구매계약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설비의 효율적 계약 참여 등을 위하여 별도의 계약시장제도의 운영 및 통합사업자의 참여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4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방식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이하 “계약시장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시장제도를 통하여 도입할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공고 총용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도록 5년 단위로 산정하여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계약

현행	개정안
	<u>결과, 계약 수요 및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u> 1.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현황 및 전망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원안보 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물량 등 5. 그 밖에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때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설비 (이하 “소규모설비”라 한다) 2. 제12조의16에 따른 보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촉진 3. 산업·수출 경쟁력 및 안보강화 4. 그 밖에 계약시장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때 소 규모설비의 효율적인 계약 참여와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 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다수의 소규모설비들을 모아서 하나의 통합 사업자로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소규모설비 지 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재생에너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 행하는 자(이하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및 제45조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는 범위

현행	개정안
	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전력구매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계약자”라 한다)에게 계약시장제도에서 낙찰되어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계약자가 구매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용량 선정 및 전망, 낙찰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 등 계약시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 정보, 재생에너지 공급망 및 자원안보 등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현행법 제12조의5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이하 “공급의무자”)²⁾에게 발전량의 일정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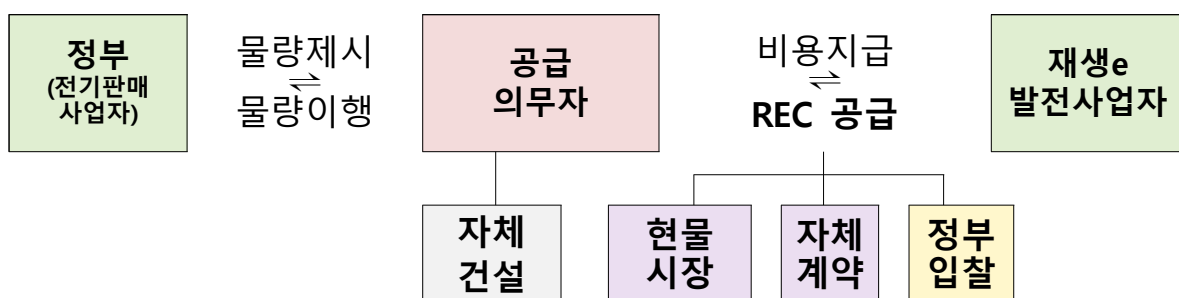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 2) (발전공기업)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등 6개사
(공공발전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2개사
(민간발전사업자) SK이노베이션,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21개사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음.³⁾

RPS 제도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의무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을 제시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직접 건설하여 발전하거나, 현물시장, 자체계약, 정부입찰 등을 통하여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하여 충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현행 RPS 제도]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총전력생산량에 동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도별 의무공급량⁴⁾의 비율을 곱한 값이며, 이는 해당 연도 전체 공급의무자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량에 해당함.

3) RPS 제도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음.

4) [별표 3]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비율(%)	2	25	3	3	35	4	5	6	7	9	125	13	135	14	15	17	19	225	25

공급의무자는 발전공기업(6개) 등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로 2025년 기준 29개사가 이에 해당됨.⁵⁾

당초 RPS 제도는 공급의무자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확산을 목표로 공급의무자가 자체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하되, 부족분은 일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공급하는 REC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임.

그러나 실제 공급의무자의 자체건설을 통한 의무이행 비중이 2012년 41.6%에서 2024년 기준 14.6%로 감소된 반면, 현물시장의 REC 구매를 통한 의무이행 비중은 2012년 4.4%에서 2024년 기준 17.5%로 증가하는 등 RPS 제도는 사실상 일반 재생에너지 사업자 주도의 시장으로 변화해왔음.

이러한 공급의무자의 과도한 현물시장 의존은 REC 가격의 급등을 초래하고, RE100⁶⁾ 이행 수요 증가는 현물시장의 추가적인 REC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⁷⁾ 이에 따라 증가된 정산비용은 현물시장의 기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전기소비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5) (발전공기업)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등 6개사
(민간발전사업자) SK이노베이션,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21개사
(공공발전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2개사

6) 2014년 국제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이 출범한 자율적 동참 캠페인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하거나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고자 함. RE100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RE100 달성에는 REC 구매 방식도 인정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REC 구매수요가 경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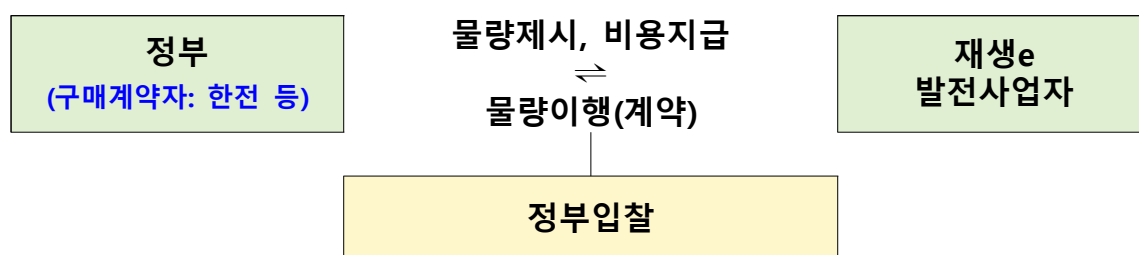
7) REC 가격(원/REC): ('21) 35,356, ('22) 56,831, ('23) 73,449, ('24) 76,499, ('25) 72,000

있는 상황임.

또한, 풍력이나 중·대규모 태양광 신규설비 투자의 경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자금조달이 용이한 장기고정가격계약 방식의 정부 입찰을 통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현물시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설비로 편중되면서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원별 균형적 보급을 어렵게 하고 있음.⁸⁾

개정안은 현행 RPS 제도를 대신하여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원별·연도별 재생에너지 입찰 물량(설비용량)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장기고정가격으로 낙찰받아 설비를 설치한 후 해당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구매자(한전 등)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계약시장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전력구매자는 이 전력을 장기계약을 통해 구매하게 되며, 추가적인 구매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음.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입찰방식)]



8) 2025년 말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 (태양광) 31GW, (풍력) 2GW, (기타) 4GW

이러한 제도의 전환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고,⁹⁾ 용량단위 공급의무를 통한 공공발전사의 재생에너지 설비의 직접 건설로 이어져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으며, 입찰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발전단가 인하¹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발전사업자 역시 고정된 가격의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안정적 수익 기반이 보장되고, 금융조달이 용이해져 시장참여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¹¹⁾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RPS제도는 고비용 구조와 진입단계 관리의 한계로 인해 특정 에너지원의 설비 편중, 수익 불안정, 시장 수급 불안 등의 문제가 있으며, 입찰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와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또한,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독일·영국·일본 등 주요국은 입찰제도로 전환¹²⁾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 개편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다만, 일각에서는 해외 주요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5~35%

9) 석탄발전 폐지와 이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과도 부합하는 방향임

10)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 내 가격 경쟁이 이루어져 발전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음

11) 현재도 RPS제도 내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대하여 발전사업자가 RPS 공급의무자와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REC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장기 간 고정가격으로 발전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달성과 발전사업 투자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12) 영국, 독일, 일본 등 RPS 제도를 도입했던 주요국은 입찰제도로 전환하는 추세고, 2021년 기준 최다 국가가 입찰제도를 재생에너지의 주요 보급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제도 전환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속화되고 발전단가가 하락하는 등 성과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에 달한 성숙된 시점에 입찰제도로 전환한 반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아직 10% 미만인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RPS제도를 계약시장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이러한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¹³⁾

또한, 구매계약자(한전 등)가 낙찰되어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 계통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는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¹⁴⁾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데,¹⁵⁾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계통 신뢰도 유지 범위”에 관한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27조의2제2항¹⁶⁾에 따라 모든 발전원의 전력 거래시 계통운영상 필요로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라는 입장임.

한편, 현행 RPS 제도를 계약시장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낮은 가격순으로 낙찰되는 가격경쟁 중심의 제도라는 점에서, 금융조달 능력이

13)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상 수력, 조력 등 설비가 늘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계약시장제도 운영의 핵심 전원인 태양광, 풍력 기준 발전비중으로 비교하면, 주요국이 입찰제도로 전환시 독일 22.4%, 영국 10.8%, 프랑스 6.2%, 일본 5.7% 등으로 우리나라의 전환시점은 적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임.

14)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강승규의원안(제2208391호)의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5) 플랜 1.5 보도자료 참고

16) 「전기사업법」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큰 대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하여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진입 장벽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¹⁷⁾

이에 안 제12조의14제3항은 정부 입찰시 소규모 설비에 대한 별도 시장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은 다수의 소규모설비들을 모은 하나의 통합 사업자로 참여기회를 보장하면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게끔 보완적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짐.

다만, 다수의 소규모설비를 모아서 하나의 통합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일부 사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낙찰 정보 변경에 따른 계약체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사업자 별도 시장 운영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391호)이 2025년 2월 24일에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17)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2024.5.)」 방안 발표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 대규모 사업자와 입찰시 경쟁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2.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 및 보급 의무 부여 등

개정안은 발전사업자,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목표관리대상자별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여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급의무량을 산정하여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며, 보급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5, 제12조의16 및 제12조의19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15(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사업자,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목표관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목표관리대상자별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이하 “보급목표”라 한다)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목표관리대상자는 보급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급 관련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실적을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목표관리대상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목표관리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수정·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대상자의 실적이 보급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목표관리대상자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 내용, 목표관리대상자 명칭 등 관련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6(재생에너지 보급의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이하 “보급의무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보급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량”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보급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 2. 계약시장제도 공고 용량 3. 보급의무자의 보급실적 4. 자원안보 현황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신설>	③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제12조의19(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18에 따른 보급대체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u>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규모 및 위반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u> ③ <u>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u> ④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u> ⑤ <u>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한다.</u>

현행 RPS 제도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하고, 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공급의무자는 자체건설 또는 외부 조달 방식으로 공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⁸⁾

개정안은 발전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 “목표관리대상자”¹⁹⁾를 지정하고, 개별 보급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실적의 점검하여 그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며(안 제12조의15),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보급의무자”²⁰⁾에 대해서는 개별 보급의무량을 부여하면서, 미이행시 과징금을 부과(안 제12조의16 및 제12조의19)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RPS 제도 하에서는 공급의무자의 직접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기여가 낮은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의무자에게 어떠한 의무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제12조의6(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19) 현행 공급의무자 중 민간발전사 21개사를 염두하고 있음.

20) 현행 공급의무자 중 발전공기업 등 8개사를 염두하고 있음.

를 부과하지 않고 계약시장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의 공급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이 현행 RPS 공급의무자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대규모 발전설비 보유자에게 실질적인 보급의무를 부여한다면, 보급의무자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RPS 제도에서 민간발전사업자의 보급 기여도 및 의무이행 수준이 발전공기업(6개사)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급의무자”의 경우 실질적인 보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발전공기업 등 공공 발전을 중심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의견임.²¹⁾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이행주체별 역할]

구 분	대 상	역 할
구매계약자	한전 등	전력구매, 비용지급
보급의무자	발전공기업 등	에너지안보, 석탄발전 전환 등
목표관리대상자	민간발전사 등	시장활성화, 재생e 보급촉진 등

한편, 개정안의 내용 중 민간발전사 등을 “목표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1년간 개선명령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민간의 경영 자율성을 해치는 등

2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공기업(6개사) 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임

부담의 과중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의 RPS 공급의무자로 분류되었던 민간발전사 등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2025년 기준 전체 의무공급량 중 발전공기업(그룹 I, 6개사)의 공급비율은 73.3%이고, 민간발전사 등(그룹 II,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포함)의 공급비율은 26.7%이며, 2021년 대비 2025년 민간발전사 등의 공급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²²⁾

[최근 5년간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그룹 I	37,282,172	59,842,466	65,432,008	63,831,647	67,150,851
	78.6%	76.1%	76.0%	73.4%	73.3%
그룹 II	10,165,196	18,780,236	20,660,430	23,122,348	24,509,252
	21.4%	23.9%	24.0%	26.6%	26.7%
합계	47,447,368	78,622,702	86,092,438	86,953,995	91,660,103
	100.0%	100.0%	100.0%	100.0%	100.0%

※ 의무공급량은 이전년도 이행연기량과 기준년도 의무공급량을 합한 값임

법 체계적 측면에서, 안 제12조의19는 보급의무자가 재생에너지 보

22) (그룹 I)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등 6개사
(그룹 II)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이노베이션,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23개사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징금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징금의 상한선 등 과징금 산정과 관련한 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유사 입법례로, 현행법 제12조의6²³⁾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3.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개정안은 보급의무자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보급의무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7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17(보급의무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보급의무자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보급의무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²⁴⁾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총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재난 복구 지원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한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 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6.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7.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1.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일 것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것

보급의무자 등이 설비용량 단위로 보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비²⁵⁾가 소요되는 자체건설이 필수적인데, 이 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되는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보급의무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일률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의 검토 등을 통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시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안정적·효율적 재생에너지 보급의무 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유사입법례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²⁶⁾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발전지구 내에서 특히 신속하

25) (태양광) 13억원/MW, (육상풍력) 31억원/MW, (해상풍력) 63억원/MW

26)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발전지구 내에서 특히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 기관장에게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관장하는 기관은 “재정경제부”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대상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²⁷⁾

개정안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예비타당성제도 취지상 패키지 사업에 포괄적으로 면제신청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업별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현행 법령 하에서도 국무회의를 거쳐 국가정책적 사업으로 확정된 경우 면제가 가능²⁸⁾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7)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9조(예비타당성조사의 신청) ① 기관장은 제3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1, 2>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 <별표 3> “주무기관 의견서” 및 <별표 5>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점검항목”을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되는 전년도 1월말, 5월말 또는 9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제1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제출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 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4.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의 보급대체이행 등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목표관리대상자 및 보급의무자(이하 “보급의무자등”)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등”)에 미달할 경우 부족량에 대하여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급대체이행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8).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의 보급대체이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대상자 및 보급의무자(이하 “보급의무자등”이라 한다)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등”이라 한다)에 미달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여 그 부족량에 대하여 보급대체이행 또는 면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급대체이행 금액을 납부하거나 보급대체이행이 면제된 보급의무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부족량만큼 보급의무등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보급대체이행 금액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한다.

개정안은 목표관리대상자 및 보급의무자가 계약시장제도 참여를 통한 보급의무 달성 및 목표관리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보급의무자등이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에너지원별·기관별 보급의무 이행과정에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보급대체 이행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을 함으로써 민간 사업자의 신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심사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강승규의원안(의안번호 제2208391호)의 경우, 보급의무자가 보급의무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이월하게 할 수 있으며, 보급의무량이 미달할 경우 미달분의 일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 보급의무자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신속하게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승규의원안의 경우 의무이행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안 심사시 이월 또는 유예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음으로, 안 제12조의18제3항은 보급대체이행금을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사업법」 제50조²⁹⁾는 기금의 재원을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법에 따른 과징금 및 기금의 수익금 등을 통하여 조성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므로, 보급대체이행금을 기금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급대체이행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등을 대행하겠다는 계획이나,³⁰⁾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는 「전기사업법」 제49조 각 호에 열거된 사업³¹⁾의 목적

29) 「전기사업법」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0)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 기금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에 규정된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31)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 9의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에 부합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또는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사용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임.

10의2. 삭제 <2020. 3. 31.>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1의2. 법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보존을 위한 사업

2. 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4.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5.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7. 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8.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사업

5. 현물시장 종료 및 공급의무이행수단으로서의 REC 제외 등

개정안은 현재 현물시장, 자체계약, 경쟁입찰 등 거래시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구매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의무량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또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REC 구매 경로 제한과 계약시장제도 도입과 관련된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안 부칙 제1조),³²⁾

기존 REC 발급 및 거래에 관한 규정(제12조의7)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되, 해당 REC의 발급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며, 이 시기까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REC를 발급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3조).

아울러, 경과조치에 따라 발급·거래된 REC 중 의무공급량을 초과하여 공급의무자가 구매한 공급인증서의 경우 보급의무등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4조).

3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예기간동안 기 발급된 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의5제5항에 유예기간동안 현물시장에서의 거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이라고 밝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 ④ (생략)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u>구매하여</u>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⑤ ----- ----- ---- <u>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구매한 경우에 한정하여</u> -----.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5제5항 및 제12조의14부터 제12조의21까지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및 제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관련 효력)	
① 제12조의7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발급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관련 경과 조치) 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기한까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발전사업	

현행	개정안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 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관련 적용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중 의무공급량을 초과하여 공급의무자가 구매한 공급인증서의 경우 제12조의15에 따른 보급목표 및 제12조의16에 따른 보급의무량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의 종류와 이행 실적 인정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PS제도를 “계약시장제도”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RPS 이행수단 중 REC 현물시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안 제12조의5제5항은 현재 현물시장을 통한 REC 구매를 제한하려는 취지임.³³⁾

개정안에 의할 경우, 계약시장제도가 도입되면 RPS제도는 다음과 같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먼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현행 시행령에 따른 2026년도 RPS 의무공급량 목표치인 15%로 유지하되, 현물

3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 개정의 후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현물시장을 제외한 이행수단으로 발급된 공급인증서만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시장 거래를 종료함에 따라 2027년부터 계약시장제도(입찰방식)를 통해서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

또한, 2032년부터는 RPS 기반의 장기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면서,³⁴⁾ 계약시장제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점차 확대되고, 2045년 이후부터는 계약시장제도와 RE100 이행기업 등을 통해서만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즉, 기존의 분산된 조달체계는 정부가 물량을 제시하고 장기계약을 통해 전력을 구매하는 구조로 전환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부칙 안 제2조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개편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REC 발급·거래에 대해 2029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질서있는 제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짐.

또한, 부칙 안 제4조는 보급의무자등이 기존에 구매한 REC 중 의무공급량을 초과하여 구매한 공급인증서의 경우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존 투자에 대한 수익 보장 등 신뢰보호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짐.

34) RPS제도는 2012년에 도입되었으며, 20년간 장기공급계약을 맺은 경우 2032년부터 공급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될 예정임.

6. 입찰관리기관 지정 및 발전정보 인증서 발급 등

개정안은 계약시장제도 관련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약시장관리기관”을 지정하여 계약시장제도 운영 및 발전정보 인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안 제12조의20 및 제12조의21 신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 범위에 계약시장제도 운영,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0(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이하 “계약시장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u> 1.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 2. <u>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u> ② <u>계약시장관리기관은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시장제도 운영 및 제12조의21에 따른 발전정보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칙(이하 “계약시장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시장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③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u>

현행	개정안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 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1(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재생에 너지 발전정보를 확인·인증하는 인증서(이하 “발전정 보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계약시장관리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③ 계약시장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 우 재생에너지원·발전량 및 발전기간 등을 확인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전 정보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정보 확인·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제31조(신·재생에너지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제31조(신·재생에너지센터) ① ----- ----- ----- -----.

현행	개정안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6. ~ 18. (생략) ②·③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계약시장제도 운영</u> <u>5의3. 제12조의14제7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 정보, 재생에너지 공급망 및 자원안보 등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u> <u>5의4. 제12조의15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 운영</u> <u>5의5.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의무 운영</u> <u>5의6. 제12조의18에 따른 보급대체이행 운영·관리</u> <u>5의7. 제12조의20에 따른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관리</u> <u>5의8.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u> 6. ~ 1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RPS 제도 하에서는 공급인증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등을 지정하여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거래시장의 개설, REC 구매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수행하는 RPS 제도 운영과 유사하게 계약시장관리기관을 지정하여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특히 RPS 공급인증기관 중 하나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제도 운영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계약시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조기 안착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계약시장제도 전환에 따라 현물시장 폐지가 예정되어, 유가증권적 성격을 가지는 REC의 현물시장 거래는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종료될 예정임.

이에 개정안은 유가증권적 성격을 배제하고 발전정보만을 포함하는 “발전정보인증서”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효율적 관리 및 기존의 RE100 이행 등을 위한 정책적 활용은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임.

7. 조성된 사업비 사용 및 과태료 부과 등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해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항목으로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운영,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 및 재생에너지 보급의무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또한, 벌칙 적용시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등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임직원,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의 입찰·낙찰 등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등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안 제33조). 목표관리대상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보급의무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5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설></u>	<u>16.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운영</u>
<u><신설></u>	<u>17.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u>
<u><신설></u>	<u>18. 재생에너지 보급의무 지원</u>

현행	개정안
16. (생략) 제33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4. ~ 6. (생략)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4. · 5. (생략) ② (생략)	19. (현행 제16호와 같음) 제33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u>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임직원</u> 3의3. <u>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위원</u> 4. ~ 6. (현행과 같음) 제35조(과태료)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u>제12조의15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3의3. <u>제12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급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u>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해 조성된 사업비(이하 “조성된 사업비”)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³⁵⁾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범위에 공급인증서의 발급·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³⁶⁾³⁷⁾

3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 <2015. 1. 28.>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6. 신·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8.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공급인증서의 발급·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5. 1. 28.>
2. 삭제 <2015. 1. 28.>
3. 삭제 <2015. 1. 28.>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2. 삭제 <2015. 1. 28.>
5.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개정안은 계약시장제도로의 전환에 따라 현행 규정을 참고하여 제도 전환과정에서 운영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성된 사업비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보급의무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시장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적용 범위를 보완함으로써 입찰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정책 집행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여짐.

문 의 처
02)6788-553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참고1

해외 사례

- (해외 사례) 영국, 독일, 일본 등 기존 RPS를 도입한 국가에서도 입찰제도로 전환, 최다 국가('21년 131개국)에서 주요 보급수단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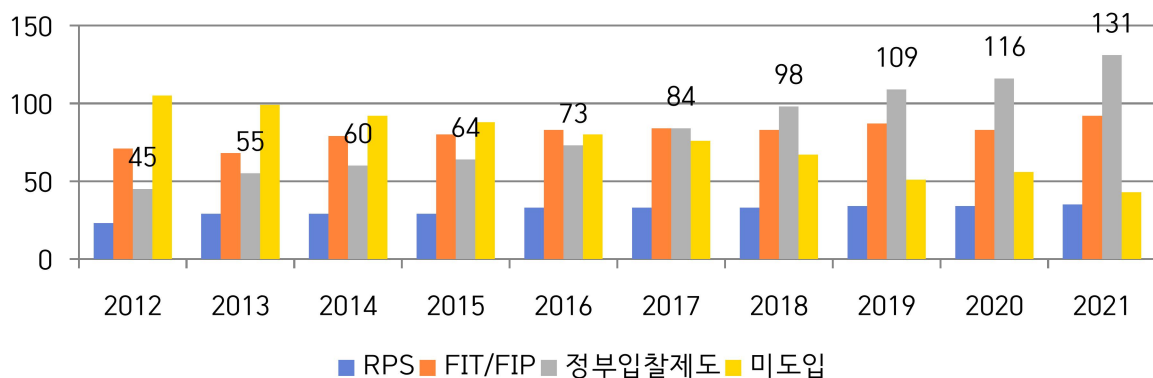
* 주요국가별 전환 시점 : (영국) '14년, (일본) '17년, (프랑스·독일) '17년

< 국가별 재생e 보급수단 현황 (RPS-FIT/FIP·입찰제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RPS	23	29	29	29	33	33	33	34	34	35
FIT/FIP	71	68	79	80	83	84	83	87	83	92
입찰제도	45	55	60	64	73	84	98	109	116	131
미도입	50	45	38	35	34	74	66	51	56	43
통계부재	55	54	54	53	46	2	1	0	0	0
전체	196	196	196	196	196	196	196	196	196	196

* 출처 : Renewable Global Status Report(REN21, 각 연도별 발간물을 이용해 재구성)

< 해외 재생E 정책 도입 현황 >



- 주요국들은 RPS제도의 높은 가격 변동성, 시장가격 신호 부재 등 문제로 개편, 전환 후 보급 가속화 및 발전단가 하락 등 성과 확보

< 주요국 입찰제도 전환 후 보급 가속화 사례 >

구분	도입 전 (Y-5)		전환 시점 (Y)			도입 후 (Y+5)		차이
프랑스	2012년	15.0%	2017년	16.6%	1.6%p	2022년	24.2%	7.6%p
영국	2009년	6.9%	2014년	19.3%	12.4%p	2019년	37.2%	17.9%p

* 출처 : (발전비중) World Energy Balances 2024(IEA, '24.7)

참고2 영국, 공급의무 제도 개편시 의무비율 유지 사례

- 영국은 '14년도 경매제도(CfD)를 도입, 전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 RPS제도(RO)를 '17년까지 유지('17년 이후 RO제도로 신규설비 진입은 불가)

* (전환기간) '14.10월(CfD 도입) ~ '17.3.31이며, 기간 내 신규 사업자는 RO 또는 CfD 선택

- 입찰제도 특성상 입찰 참여 이후 제도 진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간의 별도 전환기간을 둔 것으로 조사

* 기존 RO제도는 실제 발전량 기반의 인증서(ROC)를 기반으로 실적을 제출하는 반면, 입찰제도는 설비용량(MW)을 기준으로 입찰하는 방식

< 영국 보급제도 체계 >

NFFO('90~'99)	
	RO('02~'17)
	舊FIT('10~'19)
	경매(CfD기반)('14~현재)
	SEG(新FIT, '19~현재)

* RO는 '17년도에 종료한 제도로 계약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어 '37년에 최종 만료

- (의무비율) '18년 이후 RO제도 최종 의무비율(40.9%)을 그대로 유지

- (인증서) '18년도 이후 RO제도로 신규 설비는 진입이 불가하나, 기존 설비 발전에 따른 인증서를 계속 발행한 것으로 조사

- (이행관리) 제도 전환에 따라 의무비율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동일 비율을 유지하되 인증서 기반의 의무량 조정으로 이행 관리

* 국내 RPS는 MWh에 가중치를 곱하여 REC를 기반으로 의무량을 산출하고 있으며, 영국 RO도 MWh에 가중치를 곱하여 ROC를 기반으로 의무량을 산출(국내 유사)

< 영국 RO 의무비율 및 의무량 >

(단위 : 천ROC)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의무량	127,624	130,184	119,091	127,815	121,847
(의무비율)	(40.9%)	(40.9%)	(40.9%)	(40.9%)	(40.9%)

* 출처 : 영국 RO 및 CfD 제도 운영관리기관(Ofgem)

참고3

영국, 대체이행 제도 개요 및 국내 도입 검토

□ 영국 재생에너지 대체이행(Buy-Out) 제도

- (개념) 의무사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의무사용증서(ROC) 부족 등으로 의무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체이행제도(Buy-out) 운영중
- (방식) 의무이행 관리 기관(Ofgem)에 대체이행비용(Buy-out price)을 지불하고, 의무 이행으로 간주
- (상한) 의무 기간별로 대체이행을 통한 매수 지불금 한도액을 두어 일정 수준 이하에서만 대체 이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대체이행제도 국내 도입 검토

- 입찰제도로 전환 시 현물시장이 종료됨에 따라 보급의무 등 유연한 목표달성 관리를 위해 입찰제도 외 별도 이행 수단 필요성 有

* (현물시장) 고비용 외부조달, 신규투자 효과↓ → (보급대체이행) 저비용, 신규투자 효과↑

<재생에너지 대체이행 프로세스>



참고4

2026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공고

□ 총 의무공급량(29개 공급의무자): 69,330,845MWh 및 94,289,948REC

구 분		의무공급량(MWh)	의무공급량(REC)
그룹 I	한국수력원자력	13,210,640	17,966,470
	한국남동발전	7,629,172	10,375,674
	한국중부발전	7,790,017	10,594,423
	한국서부발전	7,251,792	9,862,437
	한국남부발전	7,504,448	10,206,049
	한국동서발전	6,884,482	9,362,896
그룹 II	한국지역난방공사	2,127,765	2,893,760
	한국수자원공사	106,458	144,783
	SK이노베이션	821,767	1,117,603
	GS EPS	1,019,262	1,386,196
	GS파워	956,013	1,300,178
	포스코인터내셔널	1,481,210	2,014,446
	씨지엔올촌전력	668,843	909,626
	평택에너지엔파워	403,983	549,417
	대륜발전	208,445	283,485
	에스파워	559,376	760,751
	포천파워	541,783	736,825
	동두천드림파워	999,709	1,359,604
	파주에너지서비스	1,535,782	2,088,664
	GS동해전력	422,484	574,578
	포천민자발전	597,408	812,475
	신평택발전	655,674	891,717
	나래에너지서비스	634,287	862,630
	고성그린파워	1,428,771	1,943,129
	강릉에코파워	891,042	1,211,817
	여주에너지서비스	891,574	1,212,541
	삼척블루파워	521,364	709,055
	통영에코파워	812,654	1,105,209
	울산지피에스	774,640	1,053,510
합 계		69,330,845	94,289,948

* 공급인증서 기준 의무공급량 산출 시 환산비율 1.36 적용(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